**특 보** 2025.10.2 (목)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398-3620~2 / 팩스398-3630 /

발행인 고병준·편집인 윤태현.성의경

#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10문10답' ···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나서야"

## 사장 선출서 정치권력 영향 축소 절실... "사원 총의 모아 국회 설득해야"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구성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만큼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최근에 나온 새로운 화두가 아닙니다. 이미 20년 넘게 사내외에서 또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의돼왔고 여러차례 추진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지배구조를 정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이하 진흥법)은 제정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고, 그 사이 구성원들의 세대는 교체됐습니다.

그간의 논의와 진흥법 개정 시도를 경험한 구성 원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은 당연한 것이지만 새로 입사한 구성원들에게는 궁금증의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의 현재 지배구조는 어떻게 구성됐으며 경영 진은 어떤 과정으로 선임되는지, 문제점은 무엇이 며 과연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진행법이 개정되면 찾아올 변화는 어떤 것인지 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노조는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추려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번 특보를 제작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관심을 넘어서 참여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질문들에도 답하고 공유하겠 습니다.

#### 1. 연합뉴스 관련법 개정은 왜 해야 하나요?

→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는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입니다.

진흥회는 이사진 7인(임기 3년·1차례 연임 가능) 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2명은 정부가, 3명은 각각 국회의장과 여·야당이, 나머지 2명은 각각 신문협 회·방송협회가 추천하며 이들 모두를 대통령이 임 명합니다.

신문협회·방송협회가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하면 5

명을 전부 정치권이 추천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진흥회 이사진의 영향력은 막강합 니다. 연합뉴스를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사장을 추천하고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치권과 결탁한 인물이 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정권의 향배에 따라 불공정보도, 사내 민주주의 후퇴, 경영난, 근로조건 악화 등의 폐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투쟁했지만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진흥법은 22년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종속된 언론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 안정한 현실을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이제는 연합뉴스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의 영향 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명실공히 '공영언론'으 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흥법 개정은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구성원들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 2.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어떤 조직이고 목적은 무 엇인가요?

→ 앞서 설명했듯 연합뉴스는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배구조 속에 있습니다.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지배구조개선특위)는 노조 직속 상시 기구로 정치후견주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2000년 발족한 '소유구조개편 추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구조가 정치권력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사장 선출 절차도

연구합니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경영진으로 진출하는 악순환을 배격합니다.

구성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개선특 위는 그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장이 바뀌는 시점에만 간헐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진행 하며 활동을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직결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 스통신진흥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 습니다.

#### 3. 진흥법 개정을 왜 지금 해야 하나요? 근로조건 개선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요?

→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구성원들이 시도한 해법은 진흥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연합뉴스 대표 이사 추천권을 가진 뉴스 통신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사진에 미치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면 지배구조가 개선됩니다.

그간 사내에서는 구성원 총의를 모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론과 정치 권의 호응을 얻지 못해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 개정을 위한 외부환 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법과 비슷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고, 최근 시행됐습니다. 방송법에 영향을 받는 한국 방송공사(KBS)는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스통신진흥법은 방송법만 큼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은다면 법 개정은

2면에 계속 ☞

**연합**노보 2025.10.2 (목)

#### ☞ 1면에 이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2003년 회사 경영난을 극복하고 위상을 재정립 하기 위해 입법된 뉴스통신진흥법은 구성원들이 투표로 총의를 모아 거둔 결실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보다 근로조건 개선이 더 시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독료 삭감으로 허 리띠를 졸라매며 일한 지난 2년을 생각해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노조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근로조건을 개 선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회 사의 밝은 미래가 있어야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4. 사장 선출 방식을 꼭 바꿔야 하나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안 되나요?

→ 2005년 뉴스통신진흥회 출범 이래 오늘날까지 8명의 사장이 임명되었지만 매번 개인의 능력이나 비전을 보기보다 정치권의 낙점을 누가 받았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했음에도 경영진 선출과정에서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진흥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합뉴스 사장 추천입니다. 그런데 진흥회 이사진의 절대 다수(총 7인 중 5인)는 정치권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장 추천 시 이사회 의결 정<del>족수는</del> 재적 이사 ⅓ 이상의 찬성이지만 정부와 여당 추천 이사 숫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정치권에 줄을 대지 않으면 사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근거도 미약합 니다.

우선 진흥법에는 사장을 추천할 때 별도의 사추 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진흥회 정 관에는 명시돼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그간 진흥회는 사추위를 설치·운영하긴 했으나, 이 정관대로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 진흥회는 정관을 바꿔 사추위 위원 추천 방식을 임의로 바꾸거나 시민 평가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장 선출의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는 5명으로 구성된 사추위원에 진흥회 이사가 3명 이 참여하는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달 공포된 방송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이사회가 아닌 100명 이상의 참여로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에 복수의 사장후 보 선발권을 넘긴 것은 사장 선임과정에 '공영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5.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왜 노조가 주도하나요?

→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구성원 과반이 가입한 조직으로 회사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미래를 결정하는 논의는 당연히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현재 사측은 법 개정 논의가 가져올 또 다른 파장을 우려하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2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낡은 법으로 인해 정치후견주의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는 논의 조차 시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진흥법은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과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노조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정치권력의 이해와 경영진의 입맛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흥법이 2003년 특별한시법으로 제정될 당시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가 나옵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연합뉴스를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게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사장 선임 절차는 후보자어느 누구에도 유리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정치권에 줄을 댄 특정인물이 사장이 되는 현 구 조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으로 일각의 목소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노조는 2003년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20여년 간 사장추 천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사장선임 시민 참여 공 개토론회 등을 전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 다

노조는 규약이 정한 지배구조 개선 특위를 통해 사내에 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전파하고 민주적 절 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을 계획입니다. 그 리고 최종 결정은 구성원들의 판단에 따를 것입니 다.

## 6. 진흥법을 개정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첫 번째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기능 수행을 공고히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회 이사진의 숫자를 늘려 현재 이사 절대 다수를 추천하는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을 축소해 정치 후견주의를 탈피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편집권 독립과 보도의 공정성을 법 조 문에 명시하고 지금까지 '임의규정'또는 '권고사 항'으로 남아있던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와 노사 편집위원회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여 공정 보도 실현 장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은 2012년 103일 파업 끝에 '편집총국 장 임면동의제'를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성과 를 거뒀으나 2015년 경영진은 '편집국장 직무대행' 이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기도 했 습니다. 이제는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독료와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예산 보전을 안정화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때 아무 이유없이 구독료 정부예산이 80% 이상 삭감하면서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구독료에 대한 법조문을 강화하고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와의 계약 협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을 가지고 정권이 국가기간뉴스통 신사의 독립성과 존립을 흔들 수 없게 만들어야 합 니다.

위의 내용은 최근에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구성 원들이 지난 20여년간 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때마 다 총의를 모은 요구안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 더욱 새로운 의견과 생각들이 구성원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의를 모으는 논의를 다시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7. 구독료가 복원됐는데 굳이 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정하면 구독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합뉴스 구독료가 상당부분 복원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상황과 정권의 의지에 따른 결과일뿐 안정화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예산의 80% 이상을 삭감했고, 그 여파로 공적 기능 부서들 이 축소했을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 비 정규직 대량 해고 등 전 부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즉, 현재 구조에서는 어느 정권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산을 줄여 연합뉴스를 압박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방송3법 개정으로 KBS·MBC는 제작 자율성과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연합뉴스도 진흥법 개정을 통해 구독료와 공적 기능 예산 보전을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아마 권력이 의기에서 자유록고 구미이 안

그래야만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롭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책무를 안정적 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8. 진흥법을 개정하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 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던데?

→ 지난 2005년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연합

3면에 계속 🖙

**연합**노보 2025.10.2 (목)

#### ☞ 2면에 이어

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한 진흥법이 위 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대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당시 헌재는 세계적 정보경쟁 속에서 정보주권 수호를 위해 정부 개입·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연합 뉴스만이 충분한 취재 인력·특파원·외국어·북한뉴 스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흥법은 단순히 지위를 '선언'할 뿐, 혜택을 자동 부여하지 않고 정부 지원은 구독계약·공적업 무 수행에 따른 비용 보전에 국한된다는 점을 들어 민영뉴스통신사와의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만이 충분한 역 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영뉴스통신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를 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면 지분을 매각하고 뉴스통신진흥회를 1대주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진흥회의 경영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시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편집책임자임명동의제와 편집권 독립 의무화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사주가 있는 민영뉴스통신사가 수용하기 에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조건입니 다

물론 진흥법 개정으로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 통신사로서 공고히 하는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민 영뉴스통신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을 우려해 회사와 구성원들의 미래

가 걸린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안 됩니다. 구성원 들이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낸다면 위기는 극 복할 수 있습니다.

#### 9. 지배구조 개선이나 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전 사원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 연합뉴스는 1980년 언론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소유구조 개선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간 사장 선출 때마다 사내에서는 정치후견주의 타파 목소리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뉴스통신진 흥법 개정에 대한 크고 작은 논의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재정자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유 상증자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대안으로 검토되 었고, 결국 2001년 사원 총 투표에서 연합뉴스사법 제정 추진이 결정되어 같은 해 9월 국회에 '연합뉴 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전사원 대상 논의는 2021년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에 대한 전 조합원 설문 조사'(396명 참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지배구 조 개선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에 찬성하십니까'라 는 질문에 93.18%(369명)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 또는 일부는 찬성하지만 일부는 반대한 다고 답한 조합원은 6.82%(27명)에 불과했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배구조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우

리가 과거에 겪었던 불공정보도, 사내 민주주의 후 퇴, 경영난 등은 미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은 분명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구조 개선은 연합뉴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10. 국회나 정부가 나서야 진흥법 개정이 이뤄질 텐데 사원 총의를 모으면 개정이 가능한 건가요?

→ 지배구조 개선은 가능성을 보고 결정할 문제 가 아닙니다.

연합뉴스의 미래가 걸린 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때까지 꾸준히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원 총의는 필수입니다. 구성원 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생각과 의견이 다른데 막 무가내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배구조개선특위가 활동을 확대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특위는 앞으로 사원 간담회, 세미 나, 토론회 등을 열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개정안 초안 마련, 위헌 소지, 합헌 논리 검 토, 국회, 정당과의 협력 등 지배구조 개선의 과정 중 선택이 필요할 때마다 사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 입니다.

방송법 개정이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 결실을 맺은 상황에서 2003년 제정된 진흥법 개정을 위해 연합뉴스도 분주히 움직여야 합니다.

